

비이민자 비자에 관한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이 귀사에 미치는 영향

2020년 6월 23일

Greg Berk, Jonathan E. Meyer, Sarah Aberg, Karl Buhler, Bochan Kim

대통령 행정명령

2020년 6월 22일 백악관은 당초 2020년 4월 22일 발표된 '대통령령 10014'의 연장 및 확대 사항을 발표하고 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는 특정 비이민자 범주로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비자 금지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 요약

-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해외에서 새로운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됨.
- 이미 여권에 여행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비이민 노동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음.
- 제한된 비자는 다음과 같음:
 - H-1B
 - H-2B (식품 노동자 제외)
 - 모든 J-1 비자 (학자 및 학생 제외)
 - 모든 L-1(L-1A 임원 및 L-1B 전문 지식인 노동자 포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함:
 - 미국의 국방, 법 집행, 외교 또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경우
 - COVID-19에 감염되어 현재 입원 중인 개인에 대한 의료 제공에 관여할 경우
 - 미국의 COVID-19 대응을 위해 미국 시설에서의 의료 연구 제공에 관여할 경우
 - 또는 미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면제함:
 -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미국 식품 공급망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DHS)가 입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 사람
- **발생 가능한 향후 H-1B 노동시장 테스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노동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재정의하기 위한 규칙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적어도 몇 달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이민 국적법에 이미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의회가 그러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후원하는 취업 영주권 부여 기준 검토:** 행정명령에는 노동부(DOL)와 국토안보부(DHS)가 고용 기반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를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위 학위를 가진 2순위 취업이민비자(EB2)와 대학 학위를 가진 3순위 취업이민비자(EB3) 중 PERM 노동 인증에 기반한 그린 카드를 받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COVID-19 로 인한 여행 금지

이 외에 비이민자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여행 금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완전한 입국 금지 조치이며, 현재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은 비자 신청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비자, I-94 및 여행에 대한 지침

쉐퍼드멀린은 고용주와 외국 국적 고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비자와 I-94 의 차이점을 알고, 각각의 역할을 숙지해야 합니다.
- 비자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며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 여행 및 입국 시 사용됩니다.
 - 비자는 미국 체류 기간을 통제하지 않음.
 - 비자 만료일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임.
- I-94 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또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행하며, 신분 상태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관항에서 I-797 승인통지서와 함께 발행됩니다.
 - I-94 만료일은 미국에 머무르거나 이민국(USCIS)에 신분 상태를 변경하거나 연장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결정함.
- I-94 는 CBP 에서 온라인으로 인쇄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하는 청원서의 유효기간보다 초과하는 여행비자를 자주 발급합니다. 본인의 청원서와 I-94 가 항상 유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쉐퍼드멀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